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26조(청문)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청문 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 1. 제 목 :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 2. 공고기간 : 2024. 7. 9. ~ 7. 26.(18일간)
- 3. 처분당사자 및 처분내용

당사자	주 소	처분 원인	처분 내용
김영철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〇〇〇-〇, 202호	비콘그라운드 쇼핑그라운드 L111호 사용료 체납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2024.7.31.부)

- 처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 제5호
 - 비콘그라운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항 제1호
- 4. 열람·확인 기간 및 장소
 - 가. 열람·확인 기간: 2024. 7. 9.(화) ~ 7. 26.(금), 09:00 ~ 18:00
 - 나. 열람·확인 장소: 비콘그라운드사업소 관리사무실(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변영로 49-1)
- 5. 유의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사자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나. 상기기간 내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가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합니다.
- 6. 문의사항: 부산시설공단 비콘그라운드사업소 박정미(☎051-519-0206)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